

II

주요국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동향

- 주요국(미국, EU, 일본)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공통적으로 1:1 준비자산 확보, 발행자 인가·등록제, 상환청구권 보장, 이자 지급 금지, 준비금 분리 보관, 정기 감사 및 공시, 자금세탁방지(Anti-Money Laundering; AML)·테러자금차단(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; CFT) 준수를 요구함
 - 다만, 발행 주체, 준비자산 범위, 역외 발행자 규율 등 세부 내용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
 - 1:1 준비자산 확보란 발행된 코인과 같은 가치의 (안전)자산을 100% 준비하는 것이며, 상환청구권 보장이란 고객 요청 시 코인 가치만큼의 법정화폐로 즉각 환급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

1. 발행 주체

- EU와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기존 금융규제 체계 안의 사업자로 제한하는 반면, 미국은 연방과 주가 각각 인가할 수 있는 체계를 두고 발행 규모에 따라 감독 수준을 달리하여 비은행 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경로를 마련함
 - 스테이블코인은 국가마다 법적 명칭이 다른데, EU의 전자화폐토큰(E-Money Token; EMT)은 신용기관 또는 인가받은 전자화폐기관이 발행할 수 있고, 일본의 전자결제수단(Electronic Payment Instrument; EPI)은 은행, 자금이동업자, 특정 신탁회사가 발행할 수 있음⁴⁾
 - 미국은 은행 이외에 연방 통화감독청(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; OCC)이 인가한 기관과 발행 잔액 100억 달러 미만의 주(州) 인가 기관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함⁵⁾
 - 주 인가 기관도 발행 잔액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면 법률이 정한 기간 안에 연방기관인 OCC의 감독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⁶⁾

2. 준비자산

- EU와 일본은 은행 시스템 내 유동성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반면, 미국은 자금시장 유동성 공급과 수요 창출에 초점을 둠
 - EU는 준비자산의 최소 30%(중요 토큰은 60%)를 은행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강제하고, 일본 역시 엔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은행 예금(신탁)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, 2025년 6월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단기 국채 비중을 최대 50%까지 허용함(일본 금융청 2025)
 - 반면, 미국은 준비자산으로 현금 외에 만기 93일 이하의 단기 국채(T-bills) 및 역레포(Reverse Repo)를 폭넓게 허용함⁷⁾

3. 역외 발행자

- 미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역외 발행자의 미국 시장 접근을 허용한 반면, EU와 일본은 역외 발행자에게 현지 법인 설립 및 현지 규제 준수를 강제함
 - 미국은 SCRC⁸⁾ 전원 찬성을 전제로 재무부가 '동등하다(Comparable)'고 판단한 국가의 해외 발행자에게 미국 시장 접근을 허용함
 - 다만, 이 경우에도 OCC 등록 및 미국 내 준비금 예치가 필요함⁹⁾
 - 상호주의 약정 체결 시, 준비금 예치 요건은 미국 고객의 유동성 수요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
 - EU는 역외 발행자의 역내 직접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함
 -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EU 내 법인 설립 및 인가를 취득해야 하며, 준비자산도 EU 인가 수탁기관에 보관해야 함¹⁰⁾
 - 달러 등 비유로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일 100만 건 또는 2억 유로 초과 결제가 발생할 경우 발행 중단 의무를 부과하는 거래량 상한 규정을 통해 통화 주권을 보호함
 - 일본은 전자결제수단(EPI) 발행자를 국내 인가 은행·자금이동업자·특정 신탁회사로 한정하여, 역외 발행자가 일본 내에서 직접 발행·유통하는 경로를 사실상 차단함¹¹⁾
 -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일본 내에서 취급하려면 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등록이 필요하며, 송금 1회당 100만 엔 이하의 이전 한도가 적용됨¹²⁾

4. 한국의 제도화 동향

- 한국은 2025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특화 제도를 핵심으로 한 2단계 입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,¹³⁾ 이후 22대 국회에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발행 주체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가 지연되고 있음
 -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2024. 7. 19. 시행)은 불공정거래 규제와 이용자 자산 분리보관에 초점을 둔 1단계 법률로, 동법 제2조 제1호는 가상자산을 '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)'로 정의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일반 가상자산 정의에 포함할 뿐임
 - 현재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·준비자산·상환의무·통화주권 보호에 관한 별도 규율이 없는 상태임